

기록연구 직렬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1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청각장애
토플(TOEFL)	PBT 530점	PBT 352점	
	IBT 71점	-	
토익(TOEIC)		700점	350점
텝스 (TEPS)	(2018. 5. 12. 이전에 실시된 시험)	625점	375점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340점	204점
지텔프(G-TELP)		65점(Level 2)	-
플렉스(FLEX)		625점	375점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청각장애)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원서점수 마감일 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기록연구 직렬 영어능력검정 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청각장애 대상범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6.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6.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이 공고일부터 면접 시험일까지인 경우 반드시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041-640-8022)로 연락하여 사전 진위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진위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이 정확히 표기된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이 정확히 표기된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기록연구 직렬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청각장애 대상범위 안내

1.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 ②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2·3급)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2. 영어능력검정시험 제출 점수 기준

시험명	TOEFL(PBT)	TOEIC	TEPS		FLEX
			'18.5.12. 이전시험	'18.5.12. 이후시험	
기록연구	352	350	375	204	375

3. 제출서류

- ①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② 의사진단서 원본*(의사 소견서 불인정)

*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舊2·3급)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

- (의사진단서 발급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 예시표 표시 내용 ①
 -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예시표 표시 내용 ②
- *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에 따라 검사
-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 예시표 표시 내용 ③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상기 인은

- 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를 검사한 결과,
- ②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30%인 사람으로서
- ③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 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4. 제출방법

- ① (제출대상 및 기간)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인 증빙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및 진단서 원본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 ② (인정기간)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서류 제출한 해당 시험에 한함

5. 유의사항

-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
- 의사 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